

의안번호	제10호
의결연월일	2021. 02. 17.

논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1년 02월 09일 서원 의원 외 6명
- 나. 회부일자 : 2021년 02월 09일
- 다. 상정일자 : 2021년 02월 1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 설명요지 (제안 설명자 : 서원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나. 주요내용

-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증진을 위한 시책발굴 추진 및 기본시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.(안 제3조).
-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(안 제4조)
-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(안 제5조)
-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, 인권교육 및 홍보(안 제6조 ~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